

#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32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의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  
김규남, 김영철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  
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  
유정희, 이성배, 이종태,  
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  
허훈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공공박물관 및 공공미술관은 한 지역의 문화·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나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 공공문화시설의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.
- 이에 동 조례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구 간 문화 향유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규정 추가(안 제3조 제4항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#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역별 균형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노력의무규정<sup>1)</sup> 특성상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 재정소요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노력의무규정 특성]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(가령 “~노력하여야 한다” 등)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